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2023. 8. 30.에 발표한 「버스-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」의 이행을 위하여 차령 만료가 임박한 시외버스(고속버스포함)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에 따른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본차령을 1년 더하여 인정해줌으로써 사업자들의 대폐차 비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노선 운송사업용 차량의 차령기준 완화(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)
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 자동차 중 시외버스(고속버스 포함)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차령을 1년 더하여 인정해줌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산업부,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전

대통령령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의 승합 자동차의 사업의 구분의 대상란 중 “자동차”를 “자동차(단, 시외버스의 경우 2009년 9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별표2 제1호 비고 가목			별표2 제1호 비고 가목		
차 종 승 합 자 동 차	사업의 구분	대상	차 종 승 합 자 동 차	사업의 구분	대상
	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외의 사업용	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 월 30일까지인 자동차		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외의 사업용	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(단 시외버스의 경우 2009년 9월 1일부터 2014.12.31.까 지인 자동차.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26